

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

검 토 보 고

1. 경 과

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나. 의안번호 : 제 3129 호

다. 제출일자 : 2025. 8. 29.

라. 회부일자 : 2025. 8. 29.

2. 제안이유

가.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
재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
의결을 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6조에 따라
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
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함

○ 발행대상 : 재난관리기금(재난계정)

○ 발행금액 : 3,500억원

○ 필 요 성 : 재난관리기금 여유재원 조성

(여유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 예정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6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5. 검토의견

■ 개요

- 본 안건은 ‘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’ 국비보조사업(국비 보조율: 서울 75%)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¹⁾으로 예탁하고자 재난관리기금(재난계정)에서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의2²⁾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6조³⁾에 따라 지방채(3,500억원)를 발행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임.
- 재난관리기금 여유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은 ‘재난·재해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이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

1)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,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

2) **제11조의2(지방채 발행의 제한)**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. <개정 2016. 3. 29., 2016. 5. 29., 2017. 12. 26., 2025. 4. 1.>

1. ~ 13. (생략)

14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15. ~ 18. (생략)

3) **제6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** ① 기금은 세계현금(歲計現金)의 수입·지출·보관의 절차,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·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 <개정 2015. 7. 24., 2021. 1. 5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(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)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5. 7. 24., 2017. 7. 26., 2020. 1. 29., 2021. 1. 12.>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, 2017. 7. 26.>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 7. 24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의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4)에 따른 예수·예탁 관련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’를 근거로 한 서울시 예산담당관의 요청5)에 따른 것이며,

-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관련해서는 「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」(이하 ‘조례’) 제4조제2항제4호6)에 따라 예산담당관에서 향후 매 회계연도 상환액 및 이자를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며, 대규모 재난 발생 등 재난관리기금 추가 재원 필요시에는 예탁금을 조속히 반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.

■ 지방채 발행 목적에 대한 검토의견

- 행정안전부는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‘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’ 국비보조사업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의

4) **제9조의2(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탁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,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5) “재난·재해기금의 여유재원 예탁 관련 안내(예산담당관-9528호, ‘25.8.25.)”

6) **제4조(조성)**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개정 2013.5.16, 2020.7.16>

1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적립금
2. 구호계정 자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
3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
4. 제3호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시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.

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개정 2020.7.16>

1. 기본법 제67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시의 적립금
2. 재난계정 자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
3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
4. 제3호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시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.

경우 부담비율은 국비 75%, 시비 15%, 구비 10%로 서울시는 약 3,5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려는 것임.

□ **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개요(서울시 규모 발채)**

- 지원대상 : 서울시 거주 전국민 (총 9,130,206명, 주민등록 말소, 거주 불명 등 제외)
- 지원규모 : 1인당 15 ~ 40만원 ※ 2차 지급 : 1인당 10만원(상위10% 제외)
- (일반국민) 15만원 / (차상위·한부모) 30만원 / (기초생활수급자) 40만원
- 지급수단 : ① 신용·체크카드, ② 선불카드, ③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
- 소요예산 : 총 2조 2,291억원 (國:市:區 = 75:15:10)

- 먼저, ‘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’ 사업은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사업이나 재원확보를 위한 일반회계에서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한 실정으로,
- 이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7)가 지방채 발행 목적을 ‘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’, ‘재해예방 및 복구사업’, ‘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’, ‘지방채의 차환’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해당 현금지원성 사업은 지방채 발행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며,

7) **제11조(지방채의 발행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 다만,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.

1.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
 2.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
 3.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
 4. 지방채의 차환
 5.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
 6. 명예퇴직(「교육공무원법」 제36조 및 「사립학교법」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
- ② ~ ⑤ (생략)

-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각종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‘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’에서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8)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, 재정안정화계정)의 재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원천적으로 불가함.

- 이에 시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6조제3항9), 「재난

- 8) **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-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이하 이 조에서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 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 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-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 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 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-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-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다른 회계로의 전출
 2. 지방채 원리금 상환
-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9) **제6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** ① 기금은 세계현금(歲計現金)의 수입·지출·보관의 절차,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·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 <개정 2015. 7. 24., 2021. 1. 5.>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(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)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5. 7. 24., 2017. 7. 26., 2020. 1. 29., 2021. 1. 12.>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8조¹⁰⁾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¹¹⁾,
조례 제4조제2항제3호¹²⁾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며 지방채
발행 목적에 대해 법적으로 별도 제한이 없는 재난관리기금에서
지방채를 발행하여 소요재원을 확보하고,

<신설 2015. 7. 24., 2017. 7. 26.>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
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로 정한다.

10) **제68조(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)**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
편입하여야 한다.

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
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1. 7.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·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정한다.

11) **제75조(재난관리기금의 운용·관리)**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
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(이하 “최저
적립액”이라 한다)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(이하 “의무예치금액”이라 한다)을 금융회사 등에
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
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
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2. 5., 2017. 1. 6., 2020. 4. 2.>

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”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
의 21을 말한다. <신설 2017. 1. 6.>

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
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
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
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2. 5., 2016. 11. 1., 2017. 1. 6.>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
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14. 2. 5., 2017. 1. 6.>

[전문개정 2010. 12. 7.]

12) **제4조(조성)**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개정 2013.5.16, 2020.7.16>

1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적립금
2. 구호계정 자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
3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
4. 제3호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시
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.

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개정 2020.7.16>

1. 기본법 제67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시의 적립금
2. 재난계정 자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
3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
4. 제3호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시
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.

-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¹³⁾에 따른 예수·예탁 관련 행정안전부가 의뢰한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¹⁴⁾에 근거해 ‘재난관리기금(재난계정)’에서 ‘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’으로 예탁하고 다시 일반회계로 예탁해 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 사업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됨.
- 한편, ‘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’ 사업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 발생 시 지방채 발행이 가능토록 지방채 발행 대상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「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」 2건이 각각 ‘25년 6월 24일과 7월 2일 의원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나 아직 상정되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.

[표] 「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」 발의 현황

의안번호	의안명	제안일자	제안자	주요내용	심사진행상태
2211223	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	‘25.7.2.	서영교 의원 등 10인	지방채 발행 대상에 회계연도 내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를 추가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선제적·적극적 대응을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).	소관위심사
2211045	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	‘25.6.24.	박정현 의원 등 10인	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대규모 소송, 급격한 경기침체,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, 필요시 그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1항제3호).	소관위심사

13) 제9조의2(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,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14) 재난·재해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재원 예탁 가능

- 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 2차 접수가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「지방재정법」 개정 후 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일반회계의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서울시는 이를 우회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(재난계정)에서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소요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.
- 따라서, 금회 제출된 동의안의 재난관리기금(재난계정) 지방채 발행은 행정안전부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국비보조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우회적 방편이라 사료됨.

■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규모에 대한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3,500억원이며, 이는 ‘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’ 사업의 시비 매칭분(1,2차 지급금액)에 상당하는 것으로
- 먼저, 서울시 전체 지방채 측면에서 살펴보면, 2025회계연도 서울시 지방채 발행 총 한도액 2조 6,864억원¹⁵⁾ 대비 9월 1

15)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기준

구 분		시·도,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	시·군·구
총 한 도 액	기본 한도액	【경상일반재원 - (채무잔액 + BTL 임차료 + 우발채무 50%)】 × 10%	
	대도시 특례	기본한도액의 10% 추가	
	별도 한도액	지역개발채권·도시철도채권 발행액 + 차환액 + 지역일자리사업 +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	

※ 경상일반재원=일반재원-임시적 세외수입 【일반재원=지방세+세외수입+지방교부세+조정교부금】

일 기준 발행계획액은 1조 9,338억원으로 추가로 3,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아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제3항¹⁶⁾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.

[표] '25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대비 발행 비율

발행 총한도액* (A)	발행계획액		발행 비율	
	본예산 기준 (B)	3,500억원 추가 발행시(C)	본예산 기준 (B/A)	3,500억원 추가 발행시 (C/A)
2조 6,864억원	1조 9,338억원	2조 2,838억원	71.98%	85.01%

- 금회 지방채 발행이 이루어질 경우, 재난관리기금(재난계정) 기금운용계획 상 수입계획은 당초 1조 423억 25백만원에서 1조 3,923억 25백만원으로 증액되고 이에 따라 '지방채 증권 수입'이 3,500억원 증액됨과 동시에 지출계획 역시 당초 1조 423억 25백만원에서 1조 3,923억 25백만원으로 '예탁금' 3,500억원이 증액되는데,
- 전체적인 운용규모는 크게 증가되나 증가분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당초 계획된 2025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.

16) 제11조(지방채의 발행) ① ~ ② (생략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 다만,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,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5. 28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0. 1. 29.>

④, ⑤ (생략)

[표]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

(단위: 백만원)

수입 계획	항	목	당 초	변 경	비고
	이자수입	공공예금이자수입	30,000	30,000	변경없음
	기타수입	그외수입	300	300	변경없음
	지방채증권	모집공채	0	350,000	증 3,500억원
	예치금회수	예치금회수	631,601	631,601	변경없음
	전입금	기타회계전입금	380,424	380,424	변경없음
	계		1,042,325	1,392,325	증 3,500억원
지출 계획	세부사업		당 초	변 경	비고
	재난예방		173,273	173,273	변경없음
	응급복구		20,000	20,000	변경없음
	연구용역		700	700	변경없음
	기금관리비		15	15	변경없음
	여유자금예치		698,337	698,337	변경없음
	차입금원금상환		150,000	150,000	변경없음
	예탁금		0	350,000	증 3,500억원
	계		3,126,975	4,176,975	증 3,500억원

- 참고로, 본 동의안 통과를 전제할 경우, 지방채 발행시기 및 방법이 결정된 이후 지방채 상환계획 및 이자가 확정될 예정이고,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담당관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금상환과 이자비용을 향후 본예산에 편성하여 재난관리기금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임.
- 이와 별개로 「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9조17)에 따라 재난관리기금(재난계정)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으로의 예탁에 따른 이자는 국·공채 이자율과 시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기금(재난계정)으로 지급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.

17) 제9조(이자) 시장은 국·공채 이자율과 시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·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일반회계, 특별회계 또는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■ 종합의견

-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의 ‘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’ 국비매칭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매칭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,
- 중앙정부는 현재 소비쿠폰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가능토록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 입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,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쿠폰 2차 지급일(‘25.9.22.)이 도래하고 있어 행정안전부는 재난·재해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가능하다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
-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재난관리기금(재난계정)에서 여유재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토록 함으로써 도래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우회적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 사료되며,
- 민생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회복 마중물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시기인 점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금회 재난관리기금(재난계정)의 지방채 발행한 불가피한 측면이 인정된다 하겠음.